

의안번호	제 111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월 일 (제 297 회)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1월 10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1
----------	-----

제출연월일 : 2011년 1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조례의 제명 및 사업내용을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충청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 기금의 사업범위 확대
- 자활자금 융자대여 한도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기금의 존속기한 2020.12.31까지(10년) 명시
-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제2조, 제10조, 제13조)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충청북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 4에서 정한 사업
2.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5.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

제4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7. 시·군

제6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활을 위한”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를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로,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을 각각 “6개월”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을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으로, “3%의 범위안에서”를 “3% 이내의 범위에서”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당해 연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보건복지국장”을 “자활담당국장”으로, “기초생활담당사무관”을 “자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고보조금 2. 충청북도의 출연금 3. 충청북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p><삭제></p>
<p>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p>	<p>제3조(기금의 용도) 충청북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p>

<p>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4에서 정한 사업</p>
<p>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p>	<p>2.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p>
<p>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p>	<p>3.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p>
<p>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p>	<p>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p>
<p>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p>	
<p>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p>	
<p>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p>	<p>5.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p>
<p>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p>	
<p>제4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p>	<p>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 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p>

② (생략)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생략)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2. (신설)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

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시·군

제6조(지원신청)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

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7. 시·군

제6조(지원신청)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자활을 위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

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 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

연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 43조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삭제>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2(신설)

제11조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생략)

제16조(신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삭제>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발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자활공동체) ①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18조3(자활기금의 적립) ①보장기관은 이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 2의2.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 2의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2의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시·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대상 자활공동체)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성원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제38조(차상위계층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한 자 등

□ 2010년 자활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대여대상 :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공동체
- 대여금액 공동체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공동체의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결정
-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